
2026년 정선군 환경센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 운반 용역
- 과 업 지 시 서 -

2026. 8.



환경과 환경정화팀

2026년 정선군 환경센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 운반 용역 - 과 업 지 시 서 -

1. 목 적

본 과업지시서는 정선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동중지로 인하여 처리 능력 이상 반입되어 적치된 가연성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전문업체에 위탁운반 용역으로 태백시 환경자원센터에 처리하여 안정적인 매립시설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.

2. 과업개요

- 가. 용역명 : 2026년 정선군 환경센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 운반 용역
- 나.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6개월
- 다. 과업물량 : 1,320톤 (폐기물적치함 비치)
- 라. 위 치 : 정선군 남면 광락로 691-233(환경센터 내)
- 마. 운반장소 : 태백시 환경자원센터 (태백시 용정길 239)

3. 용역의 범위

본 과업은 정선군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정선군 남면 쓰레기위생처리장에서 태백시 환경자원센터 (태백시 용정길 239)까지 운반하여야 하며, “발주자”의 생활폐기물 반입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“계약상대자”가 안전하게 운반 하여야 한다.

4. 참가자격 조건

- 가. “계약상대자”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·운반업(생활폐기물)의 인허가를 적법하게 득한 자 이어야 한다.
- 나. “계약상대자”는 처리대상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10톤 이상 운반 가능한 암롤박스 × 1개를 정선군 쓰레기위생처리장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.

5. 처리물량

처리물량은 약 1,320톤으로 “발주자”의 사정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6. 운반기준 및 방법

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자”의 쓰레기 운반요청이 있을 시 즉시 운반하여야 하며, 폐기물 처리에 따른 「폐기물관리법」 등 환경관계 제반법규를 준수해야 한다.

7. 대금의 청구

용역대금은 매월 용역 완료 후에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“계약상대자”가 관계서류(계량전표, 대금청구서 등)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“발주자”는 검토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.

8. 안전관리 및 현장대리인 지정

“계약상대자”는 수집,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와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제반 사고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9. 책임소재

- 가. 본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, 인적·물적 피해와 민·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모두 “계약상대자”가 책임을 진다.
- 나. “계약상대자”의 귀책사유로 적기에 운반하지 못하여 “발주자”의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다. “계약상대자”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,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10. 설계변경

용역 수행 중 “발주자”의 방침이 변경되었거나 제반 상황 및 물량의 변화로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.

11. 처리기간

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 까지로 한다. 다만 처리기간 만료일까지 차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단가로 차기 계약 시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12. 기타사항

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 준하며,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계약 등 이에 수반되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“발주자”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.